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5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7인	2인

1. 일시 : 2026년 6월 25일(목) 14:00~16:0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6월 17일)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7) : 이계안, 선권수, 김우영, 김영미,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 불참 임원
 - 이사(2) : 김병환, 이자희
 - 감사(0) : 없음
- 배석 교직원
 - 법인(3)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정웅, 과장 임지윤
 - 학교(1) : 교무처장 김정원

4. 의안

-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제2호. 2026-2 전임교원 재임용 승인제청 심의
제3호.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임용 일자 정정 승인제청 심의
제4호. 소송·소청 현황 보고 및 최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정 심의
제5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황훈식 신학과 교수(이하 '황훈식 주임교수')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508장을 다 같이 부르고, 황훈식 주임교수가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35~38절을 봉독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황훈식 주임교수 이석)

예배를 마친 후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이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고 감사 재적인원 2명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됨을 확인한 후 개최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 5. 28.(목)에 개최된 제254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다. 이사장이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박승현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제254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이사장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무 처리'의 순서 변경을 제안하다. 먼저 안건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제2호. 2026-2 전임교원 재임용 승인제청 심의', '제3호.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임용 일자 정정 승인제청 심의'와 '보고사항 1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보고', '보고사항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를 먼저 논의하고 '제4호. 소송·소청 현황 보고 및 최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정 심의' 및 '제5호. 기타 안건' 및 '보고사항 제3호.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소명 요청' 순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의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 없음을 확인한 후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의안]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이사장이 '제1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정관 개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 김정웅 실장(이하 '실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실장이 본 안건은 학교법인과 평택대학교 직원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2025학년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단체협약 제58조 인사제도 개선 조항에 따라 직원의 직급을 삭제하고 직군(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을 폐지하고 직렬을 '일반행정' 단일 직렬로 통합하되, 현행 102명의 정원과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편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정관 [별표 2]의 관련 내용과 정관 제75조(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 이하 일반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기능직 등을 포함한"은 문구를 삭제하고자 한다고 주요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장이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이대화 이사의 동의와 서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현행	개정																																																																																																																																			
제7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6.26., 2022.04.27.> 1.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75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2.6.26., 2022.04.27., <u>2026.06.25.</u>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별표 2]																																																																																																																																			
<table><tr><th colspan="4">학교 일반직원 현황</th></tr><tr><td colspan="4"><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td></tr><tr><th>직급</th><th>직위</th><th>직렬</th><th>인원</th></tr><tr><td>총계</td><td></td><td></td><td>102인</td></tr><tr><td>일반직 계</td><td></td><td></td><td>66인</td></tr><tr><td>2급</td><td>수석부장</td><td rowspan="8">일반행정</td><td>2인</td></tr><tr><td>3급</td><td>부장</td><td>3인</td></tr><tr><td>4급</td><td>차장</td><td>7인</td></tr><tr><td>5급</td><td>과장</td><td>10인</td></tr><tr><td>6급</td><td>계장</td><td>12인</td></tr><tr><td>7급</td><td>주임</td><td>14인</td></tr><tr><td>8급</td><td>담당</td><td>14인</td></tr><tr><td>9급</td><td>부서기</td><td>4인</td></tr><tr><td>기술직 계</td><td></td><td></td><td>24인</td></tr><tr><td>2급</td><td>수석부장</td><td rowspan="8">기술직 (사서,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전산, 간호 등)</td><td>-</td></tr><tr><td>3급</td><td>부장</td><td>2인</td></tr><tr><td>4급</td><td>차장</td><td>2인</td></tr><tr><td>5급</td><td>과장</td><td>3인</td></tr><tr><td>6급</td><td>계장</td><td>5인</td></tr><tr><td>7급</td><td>주임</td><td>7인</td></tr><tr><td>8급</td><td>담당</td><td>4인</td></tr><tr><td>9급</td><td>부서기</td><td>1인</td></tr><tr><td>기능직 계</td><td></td><td></td><td>12인</td></tr><tr><td></td><td>6등급 계</td><td></td><td>2인</td></tr><tr><td></td><td></td><td>운전, 방호</td><td>2인</td></tr><tr><td></td><td>7등급 계</td><td></td><td>3인</td></tr><tr><td></td><td></td><td>운전, 방호</td><td>3인</td></tr><tr><td></td><td>8등급 계</td><td></td><td>5인</td></tr><tr><td></td><td></td><td>운전, 방호</td><td>5인</td></tr><tr><td></td><td>9등급 계</td><td></td><td>2인</td></tr><tr><td></td><td></td><td>방호, 교환</td><td>2인</td></tr></table>	학교 일반직원 현황				<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				직급	직위	직렬	인원	총계			102인	일반직 계			66인	2급	수석부장	일반행정	2인	3급	부장	3인	4급	차장	7인	5급	과장	10인	6급	계장	12인	7급	주임	14인	8급	담당	14인	9급	부서기	4인	기술직 계			24인	2급	수석부장	기술직 (사서,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전산, 간호 등)	-	3급	부장	2인	4급	차장	2인	5급	과장	3인	6급	계장	5인	7급	주임	7인	8급	담당	4인	9급	부서기	1인	기능직 계			12인		6등급 계		2인			운전, 방호	2인		7등급 계		3인			운전, 방호	3인		8등급 계		5인			운전, 방호	5인		9등급 계		2인			방호, 교환	2인	<table><tr><th colspan="3">학교 일반직원 현황</th></tr><tr><td colspan="3"><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 <u>2026.06.25.</u>></td></tr><tr><th>직위</th><th>직렬</th><th>인원</th></tr><tr><td>-</td><td>-</td><td>102인</td></tr><tr><td>수석부장</td><td rowspan="7">일반행정</td><td rowspan="7">102인</td></tr><tr><td>부장</td></tr><tr><td>차장</td></tr><tr><td>과장</td></tr><tr><td>계장</td></tr><tr><td>주임</td></tr><tr><td>담당</td></tr></table>	학교 일반직원 현황			<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 <u>2026.06.25.</u> >			직위	직렬	인원	-	-	102인	수석부장	일반행정	102인	부장	차장	과장	계장	주임	담당
학교 일반직원 현황																																																																																																																																				
<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																																																																																																																																				
직급	직위	직렬	인원																																																																																																																																	
총계			102인																																																																																																																																	
일반직 계			66인																																																																																																																																	
2급	수석부장	일반행정	2인																																																																																																																																	
3급	부장		3인																																																																																																																																	
4급	차장		7인																																																																																																																																	
5급	과장		10인																																																																																																																																	
6급	계장		12인																																																																																																																																	
7급	주임		14인																																																																																																																																	
8급	담당		14인																																																																																																																																	
9급	부서기		4인																																																																																																																																	
기술직 계			24인																																																																																																																																	
2급	수석부장	기술직 (사서, 건축, 기계, 통신, 전기, 전산, 간호 등)	-																																																																																																																																	
3급	부장		2인																																																																																																																																	
4급	차장		2인																																																																																																																																	
5급	과장		3인																																																																																																																																	
6급	계장		5인																																																																																																																																	
7급	주임		7인																																																																																																																																	
8급	담당		4인																																																																																																																																	
9급	부서기		1인																																																																																																																																	
기능직 계			12인																																																																																																																																	
	6등급 계		2인																																																																																																																																	
		운전, 방호	2인																																																																																																																																	
	7등급 계		3인																																																																																																																																	
		운전, 방호	3인																																																																																																																																	
	8등급 계		5인																																																																																																																																	
		운전, 방호	5인																																																																																																																																	
	9등급 계		2인																																																																																																																																	
		방호, 교환	2인																																																																																																																																	
학교 일반직원 현황																																																																																																																																				
<개정 2012.6.26, 2013.5.21., 2014.8.26., 2023.04.27., <u>2026.06.25.</u> >																																																																																																																																				
직위	직렬	인원																																																																																																																																		
-	-	102인																																																																																																																																		
수석부장	일반행정	102인																																																																																																																																		
부장																																																																																																																																				
차장																																																																																																																																				
과장																																																																																																																																				
계장																																																																																																																																				
주임																																																																																																																																				
담당																																																																																																																																				

[의안] 제2호. 2026-2 전임교원 재임용 승인제청 심의

이사장이 '제2호. 2026-2 전임교원 재임용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김정원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심의 대상자는 총 4명으로, 피어선칼리지 부교수 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정보통신학과 조교수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으로 부교수 1명과 조교수 3명이며, 「교원 인사 규정」 제4장 재임용 규정에 근거한 재임용 기준은 업적평정 점수와 필수 연구업적 충족 여부로, 최초 재임용 대상 조교수는 "연평균 690점 이상의 업적평정 점수와 국내 1급 학술지 1편 이상의 필수연구업적", 일반 재임용 대상 부교수는 "연평균 690점 이상의 업적평정점수와 국내 1급 학술지 3편 이상의 필수연구업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 심의 결과, 부교수 업적평정점수 1,008.81점과 필수연구업적 10.33편, 조교수 업적평정점수 871.95점과 필수연구업적 3.0편, 조교수 은 업적평정점수 908.49점과 필수연구업적 3.07편, 조교수 1,020.48점과 필수연구업적 9.07편을 기록하여 대상자 4명 모두 업적평정점수와 필수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을 재임용 적격으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 재임용 기간은 부교수 2026년 9월 1일부터 2032년 8월 31일까지(6년), 조교수 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4년)라고 부언하다.

재임용 기준 중 국내 1급 학술지 1편 이상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이 재임용 기간인 2년 동안 국내 1급 학술지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하자, 교무처장이 평택대학교 재임용 심사 기준에서는 최소 국내 1급 학술지 1편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매년 업적평정을 실시하여 교원의 연구 및 교육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연구실적 자료에 Springer Nature, Elsevier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학회지명이 아니라 출판사 또는 플랫폼 명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히자, 연구실적 자료에는 실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 또는 논문 제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부언하다.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이 SSCI 등 국제전문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출판사명이나 검색 사이트명이 아니라 실제 게재 학술지명과 등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Springer Nature나 Elsevier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등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논문별 학술지명과 등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다.

이사장이 승인제청 안건과 관련하여,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제청이 상정될 경우 이사회는 이를 반드시 원안대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이와 달리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실장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가 반드시 재임용을 의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승진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변하다. 다만 재임용의 경우 승인이 거부될 경우 사실상 교원의 신분의 박탈로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관계 법령과 제도상 일반 승진임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앞서 여러 이사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재임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당해 심의가 아닌 차기 대상자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임용 탈락에 따른 교원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다수의 사례에서 재임용 관련 분쟁은 학교법인보다 교원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부언하다.

이사장이 재임용 기준의 강화가 마치 노사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하였음을 밝히며, 기준 강화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안임을 확인하다. 이어 금번 심의 대상자 4인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재임용을 승인하되,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하다. 첫째, 정년보장(테뉴어)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현재 테뉴어를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설치 문제는 금번이 처음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역대 교무처장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그간 시행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차치하더라도 테뉴어 부여 및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계획을 차기 이사회(제256회)까지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다. 둘째, 재임용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재임용 기준을 상향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현 단계에서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준 개선의 방향과 필요시 교원과의 협의·협상 절차를 포함한 추진계획을 다음 이사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위 두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교무처장이 준비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이사장이 교무처장의 설명과 참석한 전체 이사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피어선칼리지 부교수 정보통신학과 조교수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4인에 대한 재임용을 승인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2호. 2026-2 전임교원 재임용 승인제청 : 원안 승인

소속	직급	임용기간
피어선칼리지	부교수	2026.09.01.~2032.08.31., 6년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	2026.09.01.~2030.08.31., 4년
정보통신학과	조교수	2026.09.01.~2030.08.31., 4년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2026.09.01.~2030.08.31., 4년

• 요구 사항

- 1) 정년보장(테뉴어) 제도 운영과 관련, 계획(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차치하더라도)을 제256회 이사회까지 수립하여 보고 할 것
- 2) 재임용 기준 개선과 관련, 재임용 기준 개선의 방향과 필요시 교원 협의·협상 절차를 포함한 추진계획(연구실적 외 대학 구성원의 역할 수행 및 기여도를 종합 반영토록)을 제256회 이사회까지 보고할 것
- 3)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심사 시에 각 논문의 등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출판사명이나, 사이트명이 아닌 정확한 논문별 학술지명과 등재 여부 반영할 것

(김지훈 이사 참석)

[의안] 제3호.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임용 일자 정정 승인제청 심의

이사회장이 '제3호.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임용 일자 정정 승인제청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교무처장이 2026년 3월 1일자로 본교에 신규 임용된 자로, 대학은 학과 개설과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을 진행하였으나, 임용 당시 기존 근무 기관인 의원면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 양 기관의 재직기간이 중복된 사실이 사후 확인되었음을 밝히고, 교무처에서 문제를 인지한 이후 즉시 법률자문을 실시한 후 당사자로부터 "기존 근로 관계 종료 및 근로관계 미종료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한시적 겸직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의원면직이 2026년 3월 24일자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다. 관련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해당 교원의 재직기간 중복(2026.03.01.~24.)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용일과 퇴직일이 중복될 경우 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용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하다. 이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6년 6월 16일 심의를 통해 의 임용일자를 기존 2026년 3월 1일에서 면직일 다음 날인 2026년 3월 25일로 정정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치는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행정적·연금제도상 문제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임용기록을 정정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설명하며, 의 임용일자를 2026년 3월 25일로 정정하는 사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상세히 설명하다.

이사회장이 향후에는 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재직기간 중복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전체 이사들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후 이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하자, 박승현 이사의 동의와 이대화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전임교원 재직기간 중복에 따른 임용 일자 정정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 요구 사항

- 1) 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재직기간 중복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
- 2) 서욱 석좌교수와 안병석 특임교수에 대해 대외 활동 시 평택대학교 소속 교수임을 밝히도록 조치할 것

[보고사항] 제1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보고

[보고사항]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

이사회장이 보고 사항 '제1호~제2호'까지 설명을 요청하자, 교무처장이 '제1호. 2026-2학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보고' 및 '제2호. 비전임교원 임용 보고'에 대하여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보고하다.

(대학 관계자 이석)

[의안] 제4호. 소송소청 현황 보고 및 최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정 심의

[의안] 제5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5호. 기타 안건'의 '1)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로, '2)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제4호. 소송·소청 현황 보고 및 최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정 심의'는 '비공개',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박승현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

다.

○ 의결 사항

▪ 제5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이대화 이사, 김지훈 이사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제4호. 소송·소청 현황 보고 및 최종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결정 심의 : 비공개
 -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 공개 지침에 따름

[보고사항] 제3호.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소명 요청에 대한 보고

이사장이 보고 사항 '제3호.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소명 요청에 대한 보고' 설명을 요청하자, 실장이 '제3호. 업무상 배임 의혹 관련 소명 요청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보고하다.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선권수 이사의 동의와 김지훈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고 16시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6. 6. 25.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 계 안

이 계 안

이 사 김 병 환

이 사 김 영 미

김영미

이 사 김 우 영

김우영

이 사 김 지 훈

김지훈

이 사 박 승 현

박승현

이 사 선 권 수

선권수

이 사 이 대 화

이대화

이 사 이 자 희

감 사 정 재 흠

정재흠

감 사 안 상 우

안상우

가
자
1
1
10
1
1